케이인증원(이하 ‘K-Certi’라 한다)으로부터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조직(이하 ‘인증조직’라 한다)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인증 받은 부분에 대하여 인증 획득 사실을 홍보할 수 있고,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인증조직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,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# **인증표시 홍보 및 제한**

1. 로고는 인증받은 해당범위(사업장, 표준, 제품 및 활동 등)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하지 않습니다.
2. 인증로고는 제품인증을 지칭하는 어떤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, 제품(서비스 포함)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.
3. ISO(국제표준화기구)의 마크와 IAF MLA마크는 인증된 조직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.
4. K-Certi 인증로고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, 한국인정지원센터(KAB) 로고는 K-Certi인증로고와 함께 사용해야합니다.
5. 인증이 취소된 경우, 인증받은 업체는 로고와 인증에 관한 모든 참조사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6. 인증로고는 제 3자에게 승계,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.

# **인증표시의 사용요령**

인증표시는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사용되지 않아야하며,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* 인증표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
* 제품 또는 단위포장 : 제품 유통을 위한 최소 단위의 품목과 담뱃값, 통조림, 음료수 캔등의 용기와 같이 단독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단위 포장
*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
* 시험소의 시험성적서,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
* 깃발, 건물 또는 차량. 단, 건물 또는 차량 제조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자사 경영시스템 인증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건물이나 차량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인증표시의 자세한 사용안내서는 당 인증원 홈페이지([www.k-certi.or.kr](http://www.k-certi.or.kr))에서 다운받아 활용 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문의사항은 케이인증원 검증팀(02-561-9001)로 연락부탁드립니다.